

제240회 정례회
2005. 7. 20(수)

심 사 보 고 서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 차

I. 회부예산안

II. 심사경과

III. 채무부담행위 현황

IV.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V. 예산안 주요 문제점

VI. 심사결과

VII. 삭감요지

VIII. 기타사항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I. 회부예산안

-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II.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년 7월 1일/충청북도교육감
- 회부 일자 : 2005년 7월 18일
- 상정 일자 :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 7. 19)심사 의결(계수조정)

III. 채무부담행위 현황

- 제2회추경예산안 채무부담은
 -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이고
 - 사업내용 및 소요사업비는,
 - 장전초등학교 등 학교신설 6개교에 609억 3,900만원,
 - 문의초등학교 등 다목적교실 증·개축이 9개교 123억 9,200만원으로,
총 733억 3,100만원이며
 - 매년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72억 423만 8천원씩
2007년부터 2026년까지 20년간 균등상환할 예정으로
채무부담액은 총 1,440억 8,476만원임.

※ BTL(Build-Transfer-Lease)사업의 정의

- 민간이 자본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후 국가·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지자체에서, 시설을 임차(Lease)사용하여, 민간이 투자를 회수하는 방식.

○ 채무부담행위액 조서

(단위 : 천원)

과 목	사 업 명	채무 부담 행위추정액 (20년간)	매년도상환계획 (2007~2026년까지)			사 업 비 (추정)
			시설임대료	운영비용	계	
합 계		144,084,760	6,137,805	1,066,433	7,204,238	73,331,000
초등학교	장전초등학교신축	22,834,760	944,303	197,435	1,141,738	11,282,000
	문의초등학교 다목적교실증축	1,879,900	93,995		93,995	1,123,000
	동광초등학교 다목적교실증축	2,172,860	108,643		108,643	1,298,000
	보광초등학교 다목적교실신축	1,879,900	93,995		93,995	1,123,000
	계(4교)	28,767,420	1,240,936	197,435	1,438,371	14,826,000
중학교	원현중학교신축	24,196,940	1,000,634	209,213	1,209,847	11,955,000
	장전중학교신축	16,908,500	699,230	146,195	845,425	8,354,000
	가경중학교 다목적교실증축	2,678,400	133,920		133,920	1,600,000
	용문중학교 다목적교실증축	2,092,500	104,625		104,625	1,250,000
	진천여자중학교 다목적교실증축	2,385,460	119,273		119,273	1,425,000
	괴산중학교 다목적교실개축	2,136,020	106,801		106,801	1,276,000
	계(6교)	50,397,820	2,164,483	355,408	2,519,891	25,860,000
고등학교	송절고등학교신축	20,911,960	864,788	180,810	1,045,598	10,332,000
	산남고등학교신축	20,911,960	864,788	180,810	1,045,598	10,332,000
	양청고등학교신축	17,576,420	726,851	151,970	878,821	8,684,000
	서원고등학교 다목적교실증축	2,906,060	145,303		145,303	1,736,000
	진천고등학교 다목적교실증축	2,613,120	130,656		130,656	1,561,000
	계(5교)	64,919,520	2,732,386	513,590	3,245,976	32,645,000

IV.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채무부담행위는 예산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 의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며, 일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시설공사 등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제도로, 금회 추경예산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개정(2005. 1. 27)에 따라 학교신설 등의 사업을 BTL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제출되는 예산으로,

○ BTL사업의 추진배경

지방교육재정의 재원부족으로 보류·지연되고 있는 초·중등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민간자본을 투자, 교육여건을 조기에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기초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시설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학교시설에 대하여는 금년 1월 동법 개정 시 새롭게 추가된 것임.

○ BTL사업의 기대효과

투자비를 장기간에 걸쳐 분산함으로써 일시적인 투자비 부담을 완화하고 시중 자금을 공공투자 자금으로 전환하여 자금흐름의 개선과 그 통한 투자가 보류 지연되고 있던 노후교사 증·개축 및 다목적 교실 신축을 적기에 추진함으로써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 할 수 있다고 보여 지며,

○ **금회 제2회추경예산안 채무부담 내용을 보면**

-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이고
- 사업내용 및 소요사업비는,
 - 장전초등학교 등 학교신설 6개교에 609억 3,900만원,
 - 문의초등학교 등 다목적교실 증·개축이 9개교 123억 9,200만원으로,
총 733억 3,100만원이며
- 매년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72억 423만 8천원씩
2007년부터 2026년까지 20년간 균등 상환할 예정으로
채무부담액은 **총 1,440억 8,476만원임.**

○ **금회추경의 채무부담 BTL사업을 추진할 때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 BTL사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없어, 여러 가지 시행착오의
개연성이 크므로 협약과 관련 하여서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며,
- 사업시행 전에 예상학생수, 노후교사 증개축 소요량 등 장기적
안목에서 신중한 검토와,
- 금융기관, 건설업체 등의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시 참여구성원의
탈퇴 등으로 인한 문제발생 가능성과 사후에 발생 할 수 있는 제
반사항에 대해 충분한 사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 지역경제의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지역 업체가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유도하는 것 등임.

- 이상과 같이 학교신설과 다목적교실 증·개축 등 BTL사업은 면밀한 분석에 의한 단계적 계획에 따라 사업추진이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최근 전국적으로도 지역건설협회의 사업 불참선언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정확한 예측으로 철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

V. 예산안 주요 문제점 : 없음

VI. 심사결과 : 수정가결

- 문의초등학교, 동광초등학교, 보광초등학교, 가경중학교, 용문중학교, 진천여자중학교, 괴산중학교, 서원고등학교, 진천고등학교 등 9개교 다목적교실 증·개축 사업비 123억 9,200만원에 대한 채무부담행위액 207억 4,422만원을 삭감

VII. 삭감요지

- 다목적교실 증·개축사업은 재원이 지방비로 20년간 채무부담을 하면서까지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됨.

VIII. 기타 사항 : 없음